

## 제10장 실행계획

### 1 현황분석

#### 1. 재정규모

##### 1.1 재정규모 현황

- 2017년 기준 속초시의 재정은 결산액 기준으로 세입 454,593백만원, 세출 362,928백만원이며, 잉여액은 91,665백만원임
- 과거 연평균증가율은 세입이 6.7%, 세출이 5.7%로 나타남

【표 3-10-1-1】 총 재정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별	예산현액	세입	세출	잉여
2012년	332,627	308,541	260,062	48,479
2013년	343,412	349,756	271,360	78,396
2014년	332,208	302,510	287,667	302,510
2015년	340,473	348,008	286,330	61,678
2016년	358,521	367,732	301,646	32,456
2017년	443,521	454,593	362,928	91,665
증가율 (%)	4.9	6.7	5.7	11.2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각 년도

##### 1.2 재정자립도

- 2017년 기준 속초시 재정자립도는 16.47%, 재정자주도는 57.34%, 재정력지수는 33.5%를 나타남
- 2012년 이후 재정자립도는 -5.5%, 재정자주도는 -3.0% 감소하였으며, 재정력지수는 2.1% 증가함

【표 3-10-1-2】 재정자립도 현황

(단위 : %)

연 별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기준재정 수요충족도 (재정력지수)
2012년	23.1	69	29.6
2013년	20.6	68	25.5
2014년	18.37	60.7	26.4
2015년	23.37	57.37	31.9
2016년	19.36	56.12	36.9
2017년	16.47	57.34	33.5
증감율 (%)	-5.5	-3.0	2.1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각 년도

주 : 1) 재정자립도 =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일반회계 X 100

2) 재정자주도 = 자주재원(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 일반회계 예산액 X 100

3) 기준재정수요충족도(재정력지수) = 기준재정수입액 / 기준재정수요액 X 100 ← 교부전기준

2. 일반회계 세출입 구조현황

2.1. 일반회계 세입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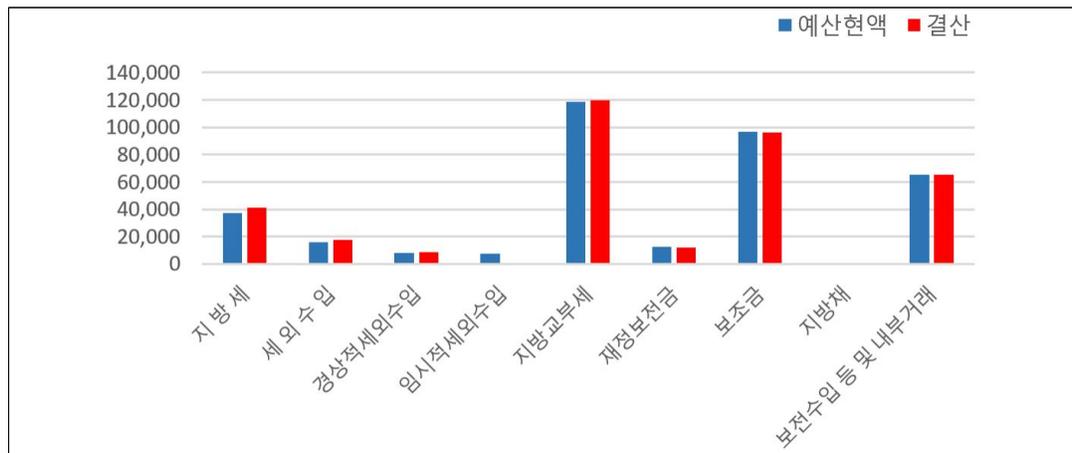
- 2017년도의 예산 현액은 345,202백만원임
- 2017년도 일반회계세입은 전체세입에서 결산 기준 지방교부세가 34.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보조금 27.3%,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8.5%를 차지

【표 3-10-1-3】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별 및 과목별	예산현액		결산		예산대 결산비율(%)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2012년	247,805	100.0	245,503	100.0	99.07
2017년	345,202	100.0	351,863	100.0	101.9
1. 지방세	37,000	10.7	41,260	11.7	111.5
2. 세외수입	15,761	4.6	17,642	5.0	111.9
3. 경상적세외수입	8,161	2.4	8,889	2.5	108.9
4. 임시적세외수입	7,600	2.2	8,753	2.5	115.2
5. 지방교부세	118,507	34.3	119,867	34.1	101.1
6. 재정보전금	12,390	3.6	11,864	3.4	95.8
7. 보조금	96,483	27.9	96,170	27.3	99.7
8. 지방채	-	-	-	-	-
9.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5,061	18.8	65,060	18.5	100.0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각 년도



## 2.2 일반회계 세출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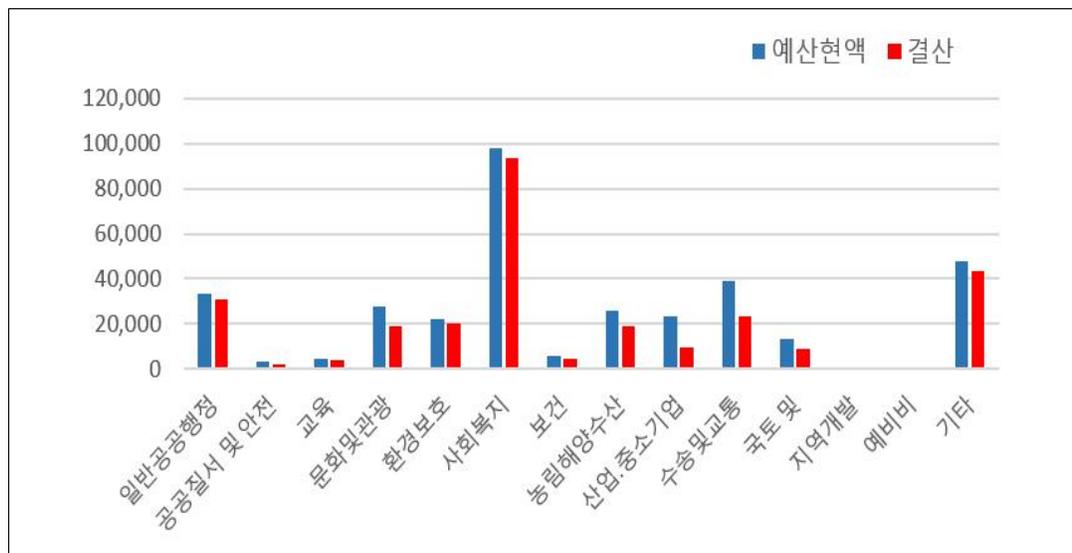
- 세출결산 결과 2017년 예산 대비 결산 비율은 81.0%임
- 2017년도 세출총액은 결산 기준 279,606백만원으로, 사회복지가 33.5%, 일반공공행정이 11.1%, 수송 및 교통 부문이 8.4%를 차지

【표 3-10-1-4】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결산		예산 대 결산비율 (%)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2012년	247,805	100.0	203,144	100.0	82.0
2017년	345,203	100.0	279,606	100.0	81.0
일반공공행정	33,521	9.7	31,047	11.1	92.6
공공질서 및 안전	3,132	0.9	2,355	0.8	75.2
교육	4,506	1.3	4,265	1.5	94.7
문화 및 관광	27,820	8.1	19,050	6.8	68.5
환경 보호	22,235	6.4	19,971	7.1	89.8
사회 복지	97,705	28.3	93,691	33.5	95.9
보건	5,560	1.6	4,727	1.7	85.0
농림해양수산	26,168	7.6	19,100	6.8	73.0
산업·중소기업	23,515	6.8	9,569	3.4	40.7
수송 및 교통	39,185	11.4	23,508	8.4	60.0
국토 및 지역 개발	13,549	3.9	9,123	3.3	67.3
예비비	770	0.2	-	-	0.0
기타	47,537	13.8	43,200	15.5	90.9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각 년도



3. 특별회계 세출입 구조현황

3.1 특별회계

01 회계수

- 회계수는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주택건설, 의료보험기금, 농공단지사업, 주차장 설치사업, 시설관리공단사업, 대포항개발사업, 장기미집행대지보상으로 총 10건임

02 예산 및 세입·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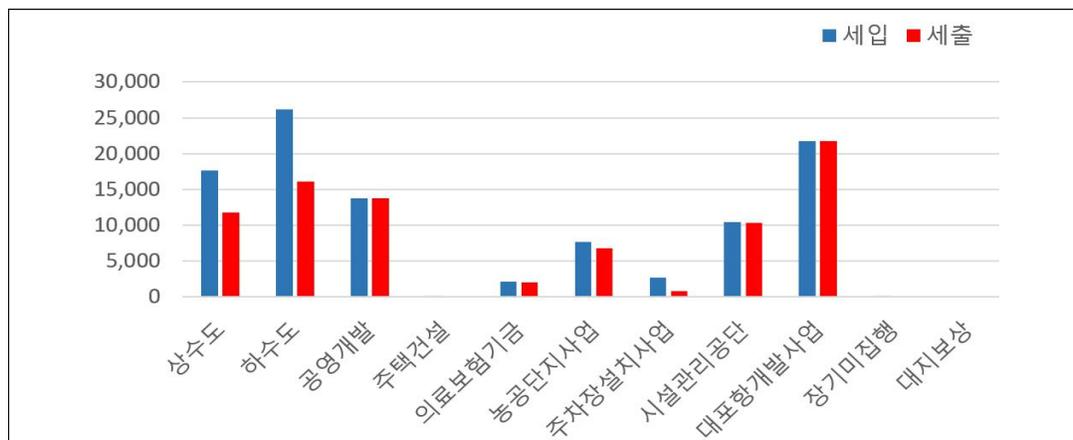
- 2017년도 특별회계 예산은 98,318백만원으로 2012년에 비해 증가
- 특별회계 세입현황은 전체적으로 5년전에 비해 세입·세출 모두 증가했으며, 세입은 하수도가 25.5%, 상수도 17.1%의 순이며
- 기타특별회계로는 대포항개발사업이 21.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표 3-10-1-5】 특별회계 예산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회계수	예산	세입		세출		비고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2012년	11	92,427	70,548	100.0	56,915	100.0	
2017년	10	98,318	102,730	100.0	83,322	100.0	
공기업특별회계	1	53,649	57,611	56.1	41,600	49.9	
상 수 도	1	15,521	17,608	17.1	11,759	14.1	
하 수 도	1	24,344	26,182	25.5	16,065	19.3	
공 영 개 발	1	13,784	13,821	13.5	13,776	16.5	
기 타 특 별 회 계	1	44,669	45,119	43.9	41,722	50.1	
주 택 건 설	1	144	141	0.1	-	-	
의 료 보 험 기 금	1	2,103	2,120	2.1	2,082	2.5	
농 공 단 지 사 업	1	8,050	7,727	7.5	6,746	8.1	
주 차 장 설 치 사 업	1	1,889	2,646	2.6	788	0.9	
시 설 관 리 공 단	1	10,499	10,497	10.2	10,346	12.5	
대 포 항 개 발 사 업	1	21,785	21,789	21.2	21,744	26.1	
장 기 미 집 행 대 지 보 상	1	199	199	0.2	16	0.0%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각 년도



## 4. 지방세 부담액 및 용도별 징수현황

### 4.1 지방세 부담액

· 2017년도 지방세 부담액은 총 96,845백만원, 1인당 부담액은 약 1,177,118만원임

【표 3-10-1-6】 지방세 부담액 현황

구 분	지방세 (백만원)	인구 (외국인제외)	1인당부담액 (원)	세대 (외국인제외)	세대당부담액 (원)	비고
2012년	29,731	83,579	355,723	36,745	809,117	
2017년	96,845	82,273	1,177,118	37,772	2,563,936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각 년도

### 4.2 지방세 용도별 징수현황

· 2017년도 지방세 징수 총 금액은 96,845백만원이며, 취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등의 순으로 비중을 차지함

【표 3-10-1-7】 지방세 징수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보통세	
	계	도세	시군세	도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2012년	29,731	-	29,731	-	-
2017년	96,845	55,585	41,260	41,514	2,111

구 분	보통세				
	도세			시군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폐지세목	주민세	지방소득세
2012년	-	-	-	493	5,178
2017년	-	-	-	1,336	11,521

구 분	보통세				목적세	
	시군세				도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폐지세목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2012년	8,932	8,581	5,761	1	-	-
2017년	10,887	8,566	7,750	-	1,897	9,553

구 분	과년년도수입		
	소계	도세	시세
2017년	1,710	510	1,200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각 년도

## 5. 문제 진단

- 속초의 재정은 자주재원에 비해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은 편임
- 재정자립도는 2017년 16.47%로 전국 시 평균(53.7%) 및 강원도(29.1%) 보다 낮음
- 시민의 자치의식을 바탕으로 한 도시내부의 상향적 정책결정 과정의 한계 존재
- 지역지구제, 도로 및 교통, 공원녹지 등과 관련된 전형적인 도시문제들이 상대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반면, 이들 문제를 담당할 집행부서가 나뉘어 있어 도시계획과 관련된 행정수요와 행정기구가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실정임
-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조직운영 및 공직환경 개선의 필요성 증대와 시민들의 시정참여 경로와 기회를 확대하고 참여방식의 개선 및 제도화가 필요한 시점임

## 2 재정계획

### 1. 기본방향

#### 01 도시 공공서비스 수요충족을 위한 충분한 자원확보

- 도시의 성장과 사회발전에 따라 도시민의 도시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양적, 질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음
-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도시재정의 확보가 필요함

#### 02 자주재원의 확충

- 지방자치제의 성숙과 함께 도시정부는 자주적 의사결정에 따른 도시행정이 요구되고 있음
- 자주적 도시행정을 지원하기 위한 자주재정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고유재원을 통한 자주재정수입이 확충되어야 함

#### 03 투자자원 한계극복을 위한 민간자본 유치

- 현행 도시재정체제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공공재정으로부터 도시발전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이 어려운 실정
- 공공재정의 투자자원 조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민간자본의 유치가 필요함
- 선택적 지방세 감면 혜택의 부여

#### 04 도시재정증진 계획

- 도시의 적절한 성장관리는 기본적으로 적정수준의 재정력이 필요하므로 도시재정증진이 우선시되어야 함
- 속초시의 성장과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도시 장기 전략사업 시행이 필요함

### 05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행정체계 구축 및 조직 개선

- 속초시의 재정능력을 점차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경영기법 도입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정책집행 유도
- 시민위주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무원의 능력개발 및 서비스 정신 강화
- 기능적으로 분화되고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하는 행정조직 구축과 권한과 책임의 하부이양을 통한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
- 속초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조직체계 구축으로 차별화되는 도시행정 환경 구축

## 2. 실천계획

### 01 합리적 세원 관리

- 재산세제는 과세표 현실화 시책을 감안, 과세시가 표준액을 현실과 일치하도록 조정
- 적극적인 세원발굴과 새로운 지방세 신설
-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부서·유관기관 간 협의를 통해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하는 등의 방법 강구
- 사업 및 집행이 확정된 사업들을 검토하여 향후 투자가 중단되지 않고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유도

### 02 세외수입원의 발굴

- 재산매각의 기준가액을 엄밀히 조사하여 가격결정
- 사용료, 수수료의 과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

### 03 지방채의 활용

- 수익사업에 소요되는 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한 수익채의 활용
- 효율적인 지방체계획의 수립
- 지방채가 금융자산의 매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자, 소득세 감면 폭 확대 등 검토
- 중장기 재정계획에 입각한 지방채 발행 제도화로 채권 종류 다양화
- 총량적 리스크관리 개념에서 재정수요, 재정능력을 감안한 탄력적 대응책 마련

### 04 민간자본의 도입

- 제3섹터방식의 확대 도입
- 현 지방자치법상 자치단체의 재정과 국고보조만으로 시민복지를 위한 도시기반 시설 투자가 어려움
- 지역개발 및 기업이익의 사회환원이라는 차원에서 민간기업자본을 유치
- 민자유치를 통해 민간참여를 유도하여 시의 재정 확충

## 05 다양한 세외수입 확보

- 세외수입 증대의 일환으로 도시공간상의 개발과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 수익자부담금 징수원칙을 통한 정책적 관리
- 상하수도, 대중교통, 의료시설, 문화시설, 폐기물처리 등과 관련하여 현재 일반 행정 방식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단위 기업적 성격의 사업을 수익자 독립채산 경영 방식으로 전환
- 수익자부담에 대한 효율수준의 결정기준이 될 수 있는 현행 효율체계 조정 및 수수료와 사용료의 불균형을 시정하여 합리적인 효율수준 정립

## 06 도시 자산 가치 증진

- 새로운 세원의 발굴, 과세지표의 현실화, 선택적 지방세 감면 혜택의 부여, 징수율 제고 등을 통해 지방세 재원의 확대 등 지속적 추진 필요
- 지역의 개발을 활성화하고 계획적인 인구유입을 유인할 수 있는 중장기적 정책 수립 필요
- 도시계획과 이에 수반되는 도시계획사업을 통하여 시 전체의 생활수준과 편의를 향상시켜 안정적인 재정기반 확보 방안 강구

## 07 지방채의 탄력적인 발행

- 중장기 재정계획에 입각한 지방채 발행 제도화로 채권 종류 다양화
- 총량적 리스크 관리 개념에서 재정수요, 재정능력을 감안한 탄력적 대응책 마련

## 08 재정수입 제고 방안

- 세외수입 확보 필요(양여금, 국고 보조금, 도비 보조금 등)
- 도시의 발전정책 및 계획수립 시 국가정책 및 강원도의 정책과 연계성 검토
- 국책사업 및 도 주관 사업 등의 유치로 세수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구상

## 09 지역개발사업의 민간참여 확대

- 제3섹터방식의 민간참여 확대 도입
- 지방자치법상 자치단체의 재정과 국고보조만으로는 시민복지를 위한 도시기반시설 투자가 어려움
- 민자유치를 통해 민간참여를 유도하여 시의 재정 확충
- 지역개발 및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이라는 차원에서 민간자본 유치

### 3. 재정규모 전망

- 재정규모는 『202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2020~2024)』의 추계를 기준으로 하여 목표연도 2040년 계획인구에 부합토록 재정규모 추계
  - 2017년 세입규모는 통계연보 일반회계 세입결산 적용
  -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세입규모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상 증가율 적용 (지방세 1.3%, 세외수입 2.0%, 지방교부세 0.8%, 조정교부금 4.3%, 보조금 등 1.7%, 기타 1.8%)
- 2040년 목표연도의 재정규모는 534,136백만원으로 자체재원이 16.8%를 차지하고 이전 재원이 63.5%, 기타재원이 19.7%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망됨

【표 3-10-2-1】 재원별 재정규모 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b>총 계</b>	351,863	402,493	446,068	490,166	534,136
<b>자체재원</b>	58,902	67,646	75,072	82,532	89,891
지방세	41,260	46,676	51,278	55,792	60,126
세외수입	17,642	20,970	23,795	26,740	29,765
<b>이전재원</b>	227,901	258,580	285,244	312,142	338,919
지방교부세	119,867	130,688	140,202	148,965	156,768
조정교부금	11,864	16,339	20,478	25,419	31,252
보조금 등	96,170	111,553	124,564	137,758	150,899
<b>기타</b>	65,060	76,267	85,752	95,492	105,326

주) 연평균 증가율을 반영하여 장래 세입규모 추정

4. 재정규모 전망

- 세출규모는 『201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2018~2022)』의 추계를 기준으로 하여 목표연도 2040년 계획인구에 부합토록 세출규모 추계
  - 2017년 세출규모는 통계연보 일반회계 세출결산 적용
  -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세출규모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상 증가율 적용 (일반공공행정 2.7%, 공공질서 및 안전 1.7%, 교육 6.7%, 문화 및 관광 -1.1%, 환경보호 0.7%, 사회복지 2.5%, 보건 -0.6%, 농림해양수산 1.3%, 산업·중소기업 -2.2%, 수송 및 교통 -0.3%, 국토 및 지역개발 -3.0%, 예비비 -1.4%, 기타 3.8%)
- 2040년 목표연도의 세출은 468,322백만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사회복지(37.4%)와 일반공공행정(12.9%)가 전체의 50.2%를 차지 할 것으로 전망됨

【표 3-10-2-2】 세출규모 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합계	279,606	325,395	368,468	416,074	468,322
일반공공행정	31,047	38,685	45,293	52,519	60,319
공공질서 및 안전	2,356	2,743	3,069	3,402	3,736
교육	4,264	6,711	9,242	12,605	17,028
문화 및 관광	19,050	17,803	17,354	16,754	16,021
환경보호	19,971	21,610	23,072	24,396	25,551
사회복지	93,691	115,206	133,694	153,659	174,925
보건	4,727	4,611	4,614	4,572	4,488
농림해양수산	19,100	21,607	23,737	25,827	27,833
산업·중소기업	9,569	8,080	7,418	6,744	6,074
수송 및 교통	23,508	23,510	23,888	24,039	23,960
국토 및 지역개발	9,123	7,105	6,229	5,410	4,653
예비비	-	-	-	-	-
기타	43,200	57,724	70,858	86,147	103,734

주) 연평균 증가율을 반영하여 장래 세출규모 추정

### 3] **재원조달방안**

#### 1. 기본방향

##### 01 지방세 관련 과세자료의 철저한 관리로 세수 징수율 제고

- 신세원 발굴, 과세형평성 개선, 세율 현실화 등을 통한 지방세 재원 확대방안 마련
- 지방세 과세 관련 "과세자료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체계적·통합적 관리
-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 담당인력 확충 또는 민간위탁 등을 통한 징수율 증대방안 마련
- 징수책임과 지출권의 일치라는 재정운영 원칙에 비추어 지방세의 수입 확충이 필요하며, 지방자치제도 실시에 따른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및 새로운 세원의 개발 추진
- 상수도·하수도·도시개발사업·주택사업 등 수익사업에 소요되는 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해 지방 수익체의 활용

##### 02 지방세 관련 과세자료의 철저한 관리로 세수 징수율 제고

- 도로·교량사업, 주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관광지·유원지 개발사업 등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갖고 사업에 대한 민간자본 참여 적극 유도
- 민간자본 유치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인센티브 부여
-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도로, 철도, 수자원, 정보통신, 에너지, 환경·문화·관광·체육, 교육, 주택시설 등)에 대한 민간투자 적극 유치

##### 03 세외수입 확대

- 세외수입에 대한 인식전환을 통해 세외수입 증대 방안 마련
- 세외수입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세외수입 증대에 대한 예산 성과금 등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 방안 마련
- 세외수입 관리구조의 시스템화를 통한 연간 관리목표제의강화, 모니터링 강화, 인센티브확대방안 마련
- 재산임대수입의 확대를 위하여 시장가격 고려 임대료 적정부과를 추진하고, 유희토지전수조사 후 매각·임대 등 적극적 활용을 도모하고, 무료 이용시설의 유료전환을 통한 시설 사용료 수입 증대 도모 등 시행

##### 04 재정운영의 건전성 도모

- 단계별 투자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선정하여 재정운영을 개선
-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사전배분제도의 정착으로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

05 민간자본도입

■ 기본방향

구분	내용
정 부 와 민 간 출 자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와 민간기업들이 출자하여 새로운 주식회사 설립</li> <li>· 자기자본 및 자체조달자금으로 사업 시행-국민부담 경감</li> <li>· 내부 수익률 보장을 위해 과다한 경영개입 배제 필요</li> </ul>
정 부 와 국 민 출 자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주체적 민영회사 설립으로 사업 추진</li> <li>· 초기에는 공기업 형태이나 점차 주식을 국민에게 매각</li> <li>· 주요재원 : 주식매각자금, 자체조달자금, 정부재원 지원</li> </ul>
B O T 방 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기업들이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주식회사 설립</li> <li>· 투자비 회수기간을 협의하여 회수기간 이후 기부채납</li> <li>· 재계약시 시설이용료 지불</li> </ul>
프 랜 차 이 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에 의해 프랜차이즈 업체로 선정된 민간기업이 시행</li> <li>· 재정지원 대책으로 정부보증채권 발행(타기업과 합자 등)</li> <li>· 준공과 동시에 정부에 귀속되고 일정기간 운영 허가</li> </ul>

■ 민간자본 도입방안 및 개발사업

구분	도입방안
민 · 관 합 출 자 형 태	정부와 대기업출자에 의한 주식회사 설립 · 정부와 민간기업들이 받기 주주가 되는 주식회사 설립
	정부와 민간출자에 의한 주식회사 설립 · 국민주 보급에 의한 국민주체적 민영회사 설립
민 간 출 자 형 태	기 부 채 납 방 식 · 민간기업에 의한 주식회사 설립(컨소시엄) · 투자비 회수 후 기부채납
	계 약 제 도 방 식 · 프랜차이즈업체를 선정하여 건설 및 운영 · 운영기간은 정부와 협의(일정기간 후 정부매수)

[표 3-10-3-1] 민간자본 도입에 의한 개발사업

구분	개발가능사업
지 역 및 도 시 개 발	부동산 및 호텔업, 공업단지조성, 빌딩의 임대 및 관리(재개발)
주 택 도 시 서 비 스	열공급사업, 건축의 취득, 시설관리
관 광 레 저	관광개발, 호텔·유스호스텔의 경영, 수족관 및 유원지 경영
농 립 수 산	식육의 제조, 보관 및 가공, 판매
상 공	전시관 임대, 유통단지 조성, 도매점포·전시장의 임대업
운 수 도 로	민영 철도업, 화물임대업, 도로
사 회 복 지 , 위 생 기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 분뇨 수집·운반 방송사업, 주차장 임대

## 2. 자원별 조달방안

### 01 자체재원에 의한 방안

- 부문별사업의 투자수요 충족을 위한 투자허용재원의 확보방안을 대처하기 위하여 상호 체계의 조정과 국고지원의 확대 등 중앙정부 및 지방세, 세외수입의 기반 강화를 통한 지방재정의 확보방안 강구
-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한 세목증설과 현행 국세 중 지방세적 성격을 가진 부동산,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그 토지를 관리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과세권 부여가 타당한 세목을 지방세로 이양 유도
- 재산수입 및 각종 허가등록에 따른 수수료 징수, 수익자 부담금 징수의 확대, 사용료 징수의 확대 적용 등을 통한 지방세외수입의 확충방안 강구

### 02 의존재원에 대한 방안

- 특정목적의 조정재원인 국고보조금 제도의 중앙과 지방간 재배분을 통한 부담 한계를 확정토록 하며, 보조재원으로서의 기능보다 평균재원으로 기능을 강화하는 지방교부세의 보강과 지방교부세법상의 교부율에 대한 고정수준 확보
- 영세한 보조금이나 목적이 달성된 보조금 등을 정비하여 그 재원을 지방세 또는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전환하고 이에 따른 중앙사업을 지방에 이양하는 방안 강구

### 03 민자유치방안

- 사회간접자본 투자비용 중 일부를 민간기업과 공동 부담함으로써 부족재원을 충당하며, 민간기업의 경제성을 확보토록 유도
- 산업단지, 택지개발 등 투자규모가 큰 반면 유지관리비 회수가 긴 사업은 민자유치로 유도
-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이 합동하여 민간기업의 자본력과 경영기법, 공공의 행정력을 활용한 제3섹터 방식의 새로운 투자주체의 구성으로 지방재정의 한계성 극복
- 지역주민과 관계한 사업추진시는 지역주민과 지자체, 지역주민과 민간기업으로 형성된 투자주체를 구성하여 현실화된 저리의 지방채 및 주식발행 등을 통한 민간자본의 확보방안 모색

【표 3-10-3-2】 민간자본 도입에 의한 개발사업

구 분	사업주체	참여기능사업	비 고
직접참여	민간부문	· 우편, 전화, 상수도	민간공급형
간접참여	민간부문(자금) 공공부문(주체)	· 병원, 복지시설 등	자금공급형
위탁참여	민간부문	· 쓰레기 수거, 검사업무 등	업무위탁형
합동참여	공공+민간	· 공항, 항만, 일부도로, 대형프로젝트 등	민간협동형

【표 3-10-3-3】 민간자본 도입에 의한 개발사업

구 분	직접참여	간접참여	제3섹터 (민관합동개발)
특 성	· 민간이 공공으로부터 사업시행에 관한 관리를 위탁받거나 허가권을 받아 직접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	· 민간이 일정지분을 가지고 공공사업에 참여하는 방식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합작투자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방식
대상사업	· 도로, 철도, 항만 등의 사회간접자본시설과 주차장, 복합터미널, 민자역사 등 지역개발사업	· 택지개발사업 · 관광개발사업	· 직접·간접참여의 모든 대상사업
장·단점	· 민간부문에 자율적인 경쟁을 바탕으로 운영 및 관리상의 효율성 제고 · 사업의 공공성이 저하될 수 있으며, 이권개입의 소지가 높음	· 부족한 자금 조달 · 민간의 창의력 활용에 한계 · 적절한 민자유치조건을 제시하기가 어렵고 특혜소지가 있음	·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 · 민간기업의 노하우를 효율적으로 활용 · 대규모 투자사업이 민간 자본의 참여로 신속하게 활성화 · 공공성 결여

#### 4 투자계획

##### 1. 기본방향

- 장기적인 도시발전방향에 따라 주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단계별 투자계획 수립
-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
- 자주재원의 확충,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 극대화를 통한 자립기반 구축
- 도시재정계획과 연계한 가용 투자재원을 산출하고 도시 전 분야의 균형적 발전을 유도하도록 합리적인 투자배분계획 수립

## 2. 투자 우선순위

### 01 투자 우선순위 선정시 고려사항

【표 3-10-4-1】 투자 우선순위 선정시 고려사항

고려사항	
· 긴급성 / 중요성	· 분배효과
· 필요성 / 우수성	(누가 이익을 얻고, 누가 손해를 보는가?)
· 재정수입효과	· 법적 / 정치적 타당성
· 위생 / 안전 효과	· 사업지연, 미집행의 결과 / 효과
· 지역경제 효과	· 불확실성 : 위험
· 환경 / 심미적 효과	· 정부 / 지자체간 조정의 필요성
· 사업으로 인한 시민들의 장기적 불편함	· 다른 사업과의 관계 등

### 02 우선순위 결정기준

- 도시성장 및 인구정착에 기여하고 지역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전력사업으로 정하여 최우선적으로 투자 추진
- 재정수입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투자가 직접수익을 유발하거나 비용환수가 용이한 사업, 민자유치가 가능한 사업 등 재원조달의 효율성이 보장되는 사업부터 우선 개발
- 생활권내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상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시설설치

### 03 시설투자 우선순위

- 상위계획과 관련한 보완적인 사업
- 지역개발 및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사업으로 고용기회를 증대·창출하는 사업
- 사업의 편익이 특정지역 및 계층에 한정되기보다는 다양한 지역·다수의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
- 투명하고 합리적인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
- 경쟁력을 높이는 도시개발 촉진을 위한 사업
- 비수익성 사업참여자에 대한 혜택부여 (시설관리권, 사용료징수권, 부대수익사업권, 세제지원, 절차 간소화 등)

